

---

# 『필리핀, 도로 운송차량의 연비 라벨에 관한 필리핀 운송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지침』 심층분석 보고서

---

2025. 02.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3
통보국	필리핀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25,289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 목 차 ]

1. 규제 개요 .....	1
2. 개정 세부내용 .....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	4
붙임. 규제 참고자료 .....	5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5.01.10 필리핀 에너지부는 도로 운송 차량의 연비 라벨(FEL-RTV) 규정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함\*

\* (통보 이력) '24.11.08. PHL/338

- (규제요지) 동 규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대한 연비 라벨(FEL) 설계 및 사양을 신설함

TBT 통보번호	▪ PHL/338/ADD.1	통보일	▪ '25.01.10.	
		고시일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운송차량의 연비 라벨에 관한 필리핀 운송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지침 시행(FEL-RTV에 관한 VFELP-IG)</li> <li>▪ Implementing Guidelines of the Philippine Transport Vehicles Fuel Economy Labeling Program on Fuel Economy Label of Road Transport Vehicles (VFELP-IG on FEL-RTV)</li> </ul>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부</li> <li>▪ Department of Energy</li> </ul>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li> <li>▪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s</li> </ul>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최종안</li> </ul>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ul>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ul>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1.01.</li> </ul>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ul>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li> <li>▪ Vehicle</li> </ul>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VIDA-IRR(전기자동차 산업개발법) 제5조와 관련된(붙임 참고) ICE(내연기관) 및 EV(전기자동차)로 구동되는 모든 도로 운송용 차량이 포함</li> </ul>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125,289	HS Code	8703

## 2

## 개정 세부내용

## □ 개정 세부내용

- 적용 범위를 개정함

[표 1]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 범위	본 시행 지침(IG)는 VFELP(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지침 제5조에 명시된 모든 도로 운송 차량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내연기관(ICE)과 전기차(EV)로 구성되는 모든 도로 운송 차량이 포함됨(전기차 산업 발전법(EVIDA) 시행규칙 제5조 참고)	본 시행 지침(IG)는 VFELP(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지침 제5조에 명시된 모든 도로 운송 차량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내연기관(ICE)과 전기차(EV)로 구성되는 모든 도로 운송 차량이 포함됨(전기차 산업 발전법(EVIDA) 시행규칙 제5조 참고) 단,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레저 및 경주 목적으로 딜러에 의해 판매되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모델은 예외로 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에 대한 연비 라벨(FEL) 사양 및 라벨링을 신설함

[표 2]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라벨링

구분	세부 내용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방향으로 인쇄</li> <li>- 너비(가로) : 16cm, 높이(세로) : 12cm</li> <li>- 전기 전용모드와 휘발유 전용모드 모두에 대한 연비 성능을 보여주는 이중 디자인으로 표시해야 함</li> <li>- 각 에너지원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정보를 보장해야 함</li> <li>- FEL은 아래 규정된 색상 견본을 표시해야 함</li> </ul>

구분	세부 내용
	<p>Swatch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등록부에 기재되거나 제출된 값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li> <li>- 복합 연료 배출량은 해당 기준에 따라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킬로미터당 리터 가솔린 환산(km/LGe) 단위로 표시되어야 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야 함</li> <li>- 복합 CO<sub>2</sub>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CO<sub>2</sub> 그램(g of CO<sub>2</sub>/km) 단위로 측정되며, 카테고리 M과 N의 경우 정수여야 하고, 카테고리 L의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야 함</li> </ul>

### 3

### 관련 법령 및 표준

#### □ 관련 법령 및 표준

##### ○ 관련 법령

- 필리핀 법률 No. 11285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보존법)
- 행정법 No. DC2023-05-0017: VFELP 지침 (필리핀 운송 차량 연비 라벨링 프로그램 지침)
- EVIDA-IRR(전기자동차 산업개발법-시행규칙)

EVIDA-IRR 번역본

## Section 5 전기 자동차

EVIDA 및 EVIDA-IRR의 목적을 위해 EV는 차량 추진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전기 구동 장치가 있는 차량을 말한다.

**5.1 배터리 EV(BEV)**는 전기 추진 차량이며 차량 추진을 위한 전원으로 트랙션 배터리만 있는 차량

**5.2 하이브리드 EV(HEV)**는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추진을 위한 연료 전원이 모두 있는 차량

**5.3 경량 EV(LEV)**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EV로,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기 개인 운송 수단 및 기타 유사한 차량이 포함된 대체교통 수단을 제공하며 무게가 50kg미만인 차량

**5.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PHEV)** 또는 외부 전기 에너지 소스에서 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는 HEV

기술의 미래 발전과 혁신을 인식하여 다른 EV DOE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단, EV에는 추진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전기 구동 장치가 있어야 함